

제359회 임시회
2017. 10. 17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우양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
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정교부금의 재원 (안 제4조)

-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 추가
(기존)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
(변경)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부동산에
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

나. 화력발전

- 도지사는 화력발전
-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신설 (안 제4조)
- 도지사는 화력발전
-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(2014. 08. 12일자)에 따라 청주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으로, 이에 대한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에 따른 시·군조정교부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※ 지방세법 시행령 136조(과세대상)

개정 전	개정('14. 08. 12.) 후
<p>6. 화력발전: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전력</u>은 제외한다.</p> <p>가.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</p> <p>나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</p> <p>다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</p> <p>라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</p>	<p>6. 화력발전: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전력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)</u>은 제외한다.</p>

-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, 조정교부금 재원 제외 대상에 ‘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’ 를 포함한 것임.
 -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는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라, “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” 를 신설한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별도 의견은 없음.